

[양허관세 적용 수입추천 절차]

o 법적근거

축산법 제3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4호

o 추천대상품목

품목	용도	대상 HS코드	물량배정방식
식용유장분말	일반내수용	0404.10.1019 0404.10.1099 0404.10.2119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선착순배정
탈지분유	일반내수용 공업용밀크카제인 제조용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선착순배정
전지분유	일반내수용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선착순배정
버터	일반내수용	0405.10.0000 0405.90.0000	선착순배정
유당	식품제조용 등	1702.11.1000 1702.19.1000	선착순배정
연유	일반내수용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선착순배정

o 추천신청 구비서류

- ① 수입추천 신청서 1부(협회 홈페이지에서 Download)
- ② 상업송장(Invoice ; I/V) 1부 - 사본 가능
- ③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1부 - 사본 가능
-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필요시)

※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사본면제

※ 주의사항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 이내

(단, 당해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함)